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425
------	------

2025. 3. 7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2월 3일, 김경 의원 외 15명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5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】

-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 2. 27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경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도록 함(안 제15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‘시·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’를 두도록 한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기존에 설치·운영 중인 ‘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’에 심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법정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2020. 12. 개정된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은 지역문화 생태계 및 정책 여건의 변화, 지역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에 대한 요구의 증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시행령을 근거로 설치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상향하였고, ‘시·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’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이는 정책 수립·평가 과정에서 문화 관련 기관, 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문화 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,

서울시의 경우 또한 대한민국 수도로서 가치지향적이었던 과거 문화정책의 틀에서 벗어나, 차별 없는 문화적 권리 향유를 위하여 보편성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.¹⁾
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의 입법기술적·내용적

1) 자치분권형 서울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(2021, 서울문화재단)

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.

다. 문화도시위원회 심의사항의 추가(안 제15조)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(이하 “법”) 제6조의2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)에 시·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(이하 “시·도 협력위원회”)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,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.
- 현행 조례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기본 조례로서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현행 서울시 조례 중 시·도 협력위원회를 규정한 사례가 없는바 해당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하여
 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시 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」(조직담당관)은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 중 신설하고자 하는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경우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 ② ...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.

1.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
2.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

- 위원회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 현행 조례는 관련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고 있음.

- 시의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
-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-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,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
- 시민제안사업 검토
- 문화원탁회의,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이와 비교하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·도 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

-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-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-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-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,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·도 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추가함으로써 위원회가 서울시 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법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의안번호
2425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김경 의원	2025.2.3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<p>〈개정 필요성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<p>〈주요 입법 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도록 함(안 제15조) 				
추진경과	○ '25. 2. 3. 일부개정조례안 발의				
부 서 검토의견	○ 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에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임 ○ 법령에 따라 설치가 규정된 시·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며, 별도 위원회 신설 없이도 우리시 문화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역할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함 				
대응방안	○ 이견 없음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				
향후계획					
담당부서	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	팀장	이남재(☎2133-2512)	담당	김근형(☎2133-2516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규남, 남창진,
박승진, 박철성, 서상열,
서준오, 아이수루, 왕정순,
유정희, 이민옥, 이원형,
이종태, 이종환, 정준호,
홍국표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도록 함(안 제15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관리”을 “관리, 지역문화의 진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관리를”을 “관리, 지역문화의 진흥을”로 한다.

6.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7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8.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,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6.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<u>관리를</u>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5조(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관리, 지역문화의 진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,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----- -----</p> <p><u>관리, 지역문화의 진흥을</u> 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(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·자문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서울시 관련부서(문화본부 문화정책과) 문의결과¹⁾ 별도의 비용수반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(문의결과 통상 1년에 2회)가 지금과 같은 추이일 경우 추가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⇒ 다만, 향후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관련 안건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안건 증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가 없어 고려대상에서 제외함